

대전광역시교육청-대전교사노동조합
2020 단체협약 공동해설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교사노동조합

차 례

I. 단체협약서 1

II.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 21

III. 교원노조 관계 법령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37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2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6

I

단체협약서

전문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라 한다)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본 협약은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더불어,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 이외 관내 타 교원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약 내용 중, 대전교사노조와 합의한 내용보다 교사의 근로조건에 유리한 협약사항은 그 협약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최종 합의된 협약안 중 교육청 관내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적 사항에 한한다.

제2조 【협약의 존중】

교육청은 본 협약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교사노조와 협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 【조례·규칙의 제·개정】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교사노조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① 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교육청은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교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공문 시행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 ③ 다음 각호의 조합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복무 관련 법령, 예규 및 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와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
 2.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간의 정책협의회
 3. 대의원과 중앙위원으로서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참석
 4. 조합 집행위원으로서 집행위원회 참석
- ④ 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내·외 연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⑤ 교육청은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 연수기관에서 신규임용 및 자격연수 과정을 운영할 때 대전교사노조 소개 자료를 배포한다. (신규임용 연수 과정에서는 적정 홍보 시간을 부여한다.)
 - ⑥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의 전임자가 임기를 마치고 복귀할 시에는 원 소속교로 복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생활근거지 및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 ⑦ 교육청은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과 직속기관이 운영하는 기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대전교사노조 홈페이지를 연결되도록 한다.
 - ⑧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학교 내 게시판 설치를 희망할 경우, 학교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다만, 비방 등 비교육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 ⑨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홍보 활동 등 최소한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⑩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최하는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전교사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⑪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에서 전임자 허가 신청을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한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노조 활동 중 재해】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의 전임자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 재해로 인정되도록 법령 개정 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의견을 제출한다.

제6조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수렴】

- ① 교육청은 공무원노조 등 타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단체교섭 요구안 등 관련 사항을 대전교사노동조합에 알리며, 대전교사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시에도 그러한다.
- ② 교육청은 공무원노조 등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제7조 【부당노동행위 예방】

- ①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동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노동 관련 과목의 개설·운영에 있어 사전에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시설 편의 제공】

- ①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사무실과 최초 사무실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집기, 사무기기 등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한다.
- ②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조합비 일괄공제】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대상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동의한 조합원에 한하여 대전교사노조에 공제내역을 통보한다.

제10조 【통지 및 문서 발송 편의 제공】

- ①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노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 ②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상호 통지한다.
 - 1. 교육감이 통지할 자료
 - 가. 교육청 및 직속 기관의 조직표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
 - 나. 교육통계연보 등 교육청 발간 간행물 목록 (시교육청 기록관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
 - 다. 각급학교 발송 공문 중 대전교사노조가 요청하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여건과 관련된 공문
 - 라.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 공문
 - 마.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
 - 2. 대전교사노조가 통지할 자료
 - 가. 규약의 변경사항
 - 나. 대전교사노조의 임원 현황
 - 다. 대전교사노조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 ③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교육청에 조합활동과 관련한 문서를 발송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점검, 대전교육정책,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① 협의는 반기별로 1회, 3시간 내로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측 합의에 의해 추가 개최한다.
- ② 정책협의회 대표는 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 혹은 팀장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양측의 협의에 의해 대표위원을 과장급으로 한다.)

- ③ 협의 안건은 상호간에 2주일 이전에 통보한다.
- ④ 정책협의회 결과는 상호 문서로 확인한다.
- ⑤ 정책협의회(교섭이 진행중일 경우 교섭 관련 회의 및 협의)시 상호발언을 기록하여 추후 확인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속기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차후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3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제1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 ①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원의 사기 저하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하여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주관식) 문항 등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③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처리 단계에서 원자료 열람요청 처리,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 활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관리자인 교감이 직접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교원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13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① 교육청은 2급 정교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대한 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연수 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③ 교육청은 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연수기관에 납부하는 연수경비 교원 1인당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고, 출장(연수) 처리한다.
- ④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는 학교당 일률적인 인원 배정을 지양하고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단, 의무연수과정은 예외로 한다.
- ⑤ 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주관 연수프로그램 편성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전교사노조는 수요조사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⑥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 ⑦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사·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⑧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자율연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 ⑨ 교육청은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은 이후에 교사가 희망할 경우, 교과별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일정 기간마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⑩ 교육청은 전교직원 필수 연수 중 하나인 '심폐소생술 연수'의 이론 수업을 온라인 병행 가능토록 안내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실습수업이 되도록 한다.

제14조 【연구 환경 조성】

- ①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 및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이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으로 하며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③ 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학습 연구년제가 합리적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에 교과·학년별 연구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교과·학년 협의회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 ⑤ 교육청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른 교원의 교육 강사수당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전문성(교육경력)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제15조 【컨설팅 장학】

컨설팅 장학은 학교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며, 장학위원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다.

제16조 【연구학교】

- ① 교육청이 자체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 공모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이전(전년도 말)에 완결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연구학교 선정심의회를 구성할 때 교원의 경우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한 1인의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장 근무조건 향상 및 업무 정상화

제17조 【교원 승진 및 인사제도 개선】

교육청은 미래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원승진체계가 마련되도록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인사의 임용 및 승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18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단위 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② 교육청은 각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 【교원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교육청은 교원 인사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위원이 1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 【전보제도】

- ①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초빙교사제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지침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점검하며 초빙교사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정기 전보 인사발령이 학사일정과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성희롱 및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비정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사가 근무성적평정점의 공개를 원한 경우 공개한다. (본인에 한함)
- ⑤ 교육청은 소속 교원 중 시도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부부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동일시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교육청(교육지원청)은 정기전보 대상자의 학교별·과목별 예상 인원을 내신 희망원 작성 전까지 공개한다.

제21조 【법정 교원 수 확보 및 교육 지원 강화】

- ① 교육청은 법정 교원 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의 인원확충을 통해 1학교 1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교사 정원내에서 교사채용이 가능한 영역에 정규교사를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학교에서 사회복지요원을 신청할 경우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제22조 【학습지도안의 자율적 작성】

교육청은 학습지도안, 초등 주간학습계획안, 일일 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폐지하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이수 집계표는 수기 작성하지 않는다. 또한 연간 지도계획은 교과, 학년 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한다.

제23조 【학교 업무 정상화 1】

- ① 교육청은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담임교사는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② 교육청은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는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하고, 기타 장부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비치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몰, 계속 추진, 확대, 신규 사업 추진 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학원 운영시간을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한다.

⑤ 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공문 생산을 억제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공문에 표시하도록 하며, 보고를 요하는 공문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를 두고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교육청은 국회·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급적 이미 구축된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제24조 【학교 업무 정상화 2】

① 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전보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강사, 외부인력 계약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교육청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위탁운영자 1차 제안서심사 지원으로 계약 업무가 간소화되도록 한다.

2. 교육청은 강사, 외부인력을 활용한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사업 추진 시 계약 및 회계 관련 업무지원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교육청은 학교장이 학교여건을 고려하고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관련 업무분장을 실시하되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리자 대상 각종 회의 및 연수 시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③ 교육청은 학교의 정보화 물품의 구입, 무선망 구축·유지관리, 유선망 개선 사업의 계약·유지관리를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추진시 개별학교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한다.

제25조 【학교 업무 정상화 3】

① 교육청은 각종 외부행사에 교원, 학생, 학부모 동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자생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은 학교장이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여 결재과정을 간소화하도록 안내한다.

④ 학교 교육계획서와 교육과정계획서를 학교 특색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교육청은 학교장이 방학 중이나 토요일(재량휴업일 등)에 학교 운영상 근무가 필요할 경우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여 근무일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⑥ 수기로 작성하는 근무상황카드(출근보조부) 또는 출퇴근 시간 기록부는 폐지한다.

⑦ 교육청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업무를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업무를 지역대로 이관하도록 노력한다.

- ⑧ 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업무 가산점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도록 노력한다.
- ⑨ 교육청은 복수담임제도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복수담임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교원 의사를 반영하여 담임 업무 분장을 정하도록 안내한다.
- ⑩ 개인 봉사활동계획서 사전 승인은 봉사활동의 의미를 구현하는 교육적 차원의 지도 목적으로 운영되며, 교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학교 사무 전결 규정을 담임 전결로 개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 ⑪ 학생 상담기록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활용하고 따로 결재하지 않는다.

제26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1】

-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결재권자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 복무를 승인하고, 사전 대면보고를 지양하도록 안내한다.
- ② 새학년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준비 기간 복무처리에서 휴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출근을 금지한다. 또한 휴직자가 출근할 경우에는 공무원 예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 ③ 교육청은 교사(유·초·중등·특수·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의 계약제 교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연가·병가·연수 등의 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④ 교육청은 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1월 이상 결원 발생 시에는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 ⑤ 교육청은 부득이 해당 학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적정액의 보결수업수당을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교회계 편성 및 집행 지침에 의거 단위학교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교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교사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⑦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⑧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7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2】

- ① 교육청은 직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② 공문 등 공적 문서 작성 시, 각 직종별 명칭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에 안내한다.

제5장 교육여건 및 교육 활동 지원

제28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청은 일부 과밀학급의 학습여건 개선과 함께 대규모 학교의 학습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9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 ①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사서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창의적인 학교 도서관 운영을 위해 매년 학교도서관 및 독서 관련 직무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환기·채광·조명·온습도 조절을 위한 시설·설비가이드(권장안)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④ 각 단위학교의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 ⑤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서관 담당 교사에 대한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에 안내한다.
- ⑥ 교육청은 국가전자도서관 원문정보를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0조 【교수·학습과정】

- ①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
- ② 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급별위원회 포함)를 구성할때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하는 위원 1~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간 교원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수전공,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과원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과원교사 발생 시 복수(부)전공 연수, 과목변경 등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⑤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 학교는 정규수업을 마치고 훈련에 임하도록 한다.
- ⑥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31조 【교구 및 교과서 선정】

교구 및 교과서 선정은 교과협의회 추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제32조 【학급운영비】

학급예산 중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집행·편성되도록 지도하고 성질상 개선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민주적인 학교 운영】

- ① 교육청은 단위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직원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전 상정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제34조 【방과후학교】

- ①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교사가 실시하도록 하며,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형태의 교과 보충 수업, 선행교육 및 성적에 따른 일부 학생에 대한 예산지원 등 비교육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실시한다.
- ③ 교육청은 초·중학교의 경우 경시대회와 특목고 진학, 각종 시험을 목적으로 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 및 경시대회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④ 교육청은 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사회 돌봄기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 행사 시 홍보하도록 안내하며,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업무가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단위학교 교원의 돌봄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교육청은 돌봄인력풀을 확대하여 구성·운영하도록 노력한다.
 2. 다양한 사유에 의해 돌봄전담사 대체인력 확보시간이 부족한 경우 확보기간(3일 이내)에 학부모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3.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위탁운영자 1차 제안서 심사를 지원한다.
 4. 기 채용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위탁운영자를 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위탁운영자로 활용 시 계약서만 별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⑥ 교육청은 방학(토요일 등) 중 방과후학교 관리를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하고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35조 【자율학습 등】

- ① 교육청은 자율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경비를 징수하거나 불법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중·고등학교의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초과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 【감사제도】

- ① 교육청은 학교 감사 시 교원의 교무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는 가급적 교육 전문직이 담당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안내한다.

제37조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제회의 이사회 및 제5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8조 【교육예산 편성 운영의 합리화】

- ① 교육청은 학교예산 편성 시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예산 및 결산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공개 방법으로 교직원, 학부모에게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공개한다.

제39조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 ① 공립유치원의 교원 정원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초등학교 신설 시 유치원을 병설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의 행정업무 경감과 업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초등학교 청소인력 기준 책정 시 병설유치원의 공용사용공간을 청소 범위에 포함하도록 안내한다.
- ⑤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유치원평가위원회에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유치원교사 1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교육청은 유치원의 유아학비 업무 중 분기별 청구 및 정산의 업무와 무상급식비 교부에 따른 업무에 대해 원장이 유치원여건을 고려하고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관련 업무분장을 실시하도록 하되,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리자 대상 각종 회의 및 연수 시 홍보하고, 유아학비시스템 불편사항 개선 건의 등 청구·정산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⑧ 교육청은 방과후과정 특성화강사 채용절차 등을 현장에 안내하여 유치원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한다.
- ⑨ 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의 영양, 보건교사가 유치원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 수당 지급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제40조 【보건교육 활성화】

- ① 교육청은 학교에서 보건교육실을 설치 및 이전할 경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실 근거리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② 교육청은 교외에서 주최하는 체육활동, 교육활동의 안전요원으로 지원하는 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③ 교육청은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보건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 ④ 교육청은 1교 1명의 보건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기 전까지 유치원 업무를 겸임하는 보건교사에게 겸임

수당을 지급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고, 유치원 학급수를 고려한 인사급지 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⑥ 교육청에 보건장학사를 배치하여 보건교육 및 감염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도록 검토한다.

제41조 【영양교육 활성화】

- ①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육 및 비상시 급식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43학급 이상 급식학교의 효율적 업무관리 및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영양교사 추가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1교 1명의 영양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④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하는 영양교사 대표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 급식 작업 환경 개선과 환경친화적 급식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바른 식생활 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 ⑦ 교육청은 다양한 체험형 영양·식생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2조 【특수교육 정상화】

- ①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종합대책 수립 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특성으로 인한 교사의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에 대해 교사 보호조치 및 치유회복'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지원한다.
- ③ 교육청은 특수순회교사 정원을 확보하여 특수교사가 출장이나 연(병)가 및 특별휴가 등을 갈 경우 해당 학교에 특수교육 순회교사를 점진적으로 지원한다.
- ④ 교육청은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 관련 보호자 연수 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년 1회 이상 운영한다.
- ⑤ 교육청은 교육부 '장애학생인권보호종합대책'(2018. 12. 19.)에 따라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및 상담사 자격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장애 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 ⑥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생활 연령 및 수행 수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전환 교육과정을 마련하며, 진로전담교사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⑦ 교육청은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학교 및 시청각장애 특수 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지침을 안내한다.
- ⑧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체험학습(수영실기 교육, 수련활동 등) 시 자원봉사자 등 인력풀을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43조 【전문상담교사의 근무 조건 향상】

- ①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상담 내실화를 위하여 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Wee센터에 상담장학사 배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배치한다.

제44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① 학교운영위원회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수업 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인정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초, 중등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자율연수, 연구년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5조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및 규제 등】

- ① 교육청은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학교에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 1. 연 1회 이상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교육청의 공식 창구의 마련
 - 4.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련기관 신고 및 상급기관에 보고
 - 5.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정기전보 신청기간 전이라도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 주관 교장, 교감 등의 자격연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 교육 시간을 1시간 이상 확보한다.
- ③ 교직원의 성 상담 및 고충 처리는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되, 학생이 피해자인 증대사안에 대해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한다.
- ④ 교직원의 성 상담 및 고충 처리는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되, 학교장 등 관리직 교직원이 행위자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6장 교육활동 보호

제46조 【교육활동 보호】

-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법률상담과 지원기구를 구성하여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해 ‘교원 안심 변호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을 검토하고, 각 교실과 교무실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학교 예산 내에서 순차적으로 설치되도록 권장한다.

③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48조와 ‘사립학교법’ 제60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현직 교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7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회복 및 치유를 위한 비용 신청과 교원 치유지원센터 이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활히 신청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돌봄교실 특기·적성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수업시간 담당 프로그램위탁운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돌봄전담사는 학생의 돌봄 및 보호, 안전관리, 프로그램 관리와 교실 관리를 하도록 안내한다.

제48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해당 교사가 대면을 원치 않을 경우, 대안프로그램 운영 등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시 건의한다.
- ②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히 침해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입법화되도록 노력한다.

제49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 ① 교육청은 연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및 홍보 동영상을 보급하여 각급 학교가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는 연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 수업방해, 정당한 교사의 지도거부 등을 행하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규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우선시 하고, 교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며, 교원 이외 강사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활동 침해 대처방안을 매뉴얼화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 ⑤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및 치유를 위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고 이를 교육청에 보고한다.

제50조 【공익제보자의 인권보호】

- ① 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노력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민원 및 공익제보자의 신분 및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공무원 및 관련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③ 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공개에 동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등에 따라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장 교원 후생 복지

제51조 【교원의 문화 활동 지원】

- ① 정부 및 교육청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박물관, 미술관, 고궁, 왕릉 등 문화 공간 입장 시 교원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한다. 또한, 학년 초 그 혜택을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 ② 교육청은 직영하는 문화 체육 시설을 교원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 관련 조례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제52조 【교원의 후생 복지】

- 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남·여 휴게실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휴게실 설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장한다.
- ② 교육청은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 시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문화행사, 체력단련 등 교원복지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체육(초등체육전담교사 포함) 및 실습담당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5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 ① 교육청은 여교원의 권리와 모자보호를 위하여 출산휴가, 육아시간을 신청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여교사의 출산휴가를 조산·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허가하도록 안내한다.
- ③ 교육청은 여교원이 매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얻을 수 있으며,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자녀 출산 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남교원의 특별휴가 10일(1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을 보장하도록 한다.
- ⑤ 교육청은 출산한 여 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⑥ 교육청은 교사가 육아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⑦ 교육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포함)후 1년 미만의 여교사에 대해서는 근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⑧ 교육청은 육아 휴직 교원이 복직하는 경우 원적교 복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생활근거지 및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54조 【출장 여비와 연구비】

- ① 교육청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며, 출장 중에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면 공무원 수당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② 교원이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 ③ 교원연구비의 경우 유·초·중등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8장 교육환경 및 학생복지

제55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 ① 교육청은 교실의 실내 측정 온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 내 각 실의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하며, 공기청정기 등 적절한 시설 또는 장비가 설치되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건축자재를 환경친화적 소재로 교체하며, 학교 신·개축 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④ 교육청은 각급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이 비치되도록 지도하고, 화장실 청소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단기간의 청소에 대하여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업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⑤ 교육청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초등학교 아동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계단 등 시설물 청소 및 학년 말 교실이동 청소에 대해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⑥ 교육청은 외부인 출입 통제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생보호 인력 지원의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노력한다.

제56조 【학생복지】

-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 매점의 투명한 운영과 위생적 관리, 질 좋은 상품이 유지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상담실을 점검하고 개선되도록 안내하여 학교상담실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담실이 미구축된 학교에는 상담실이 설치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GMO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기본계획에 권장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 ⑤ 교육청은 급식 시설 현대화(오븐기, 냉·난방 시스템 등)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57조 【학생자치】

-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제·개정, 운영할 때 학생 인권이 보장되도록 안내한다.
-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학생 자치 활동 공간(학생회의실 등)이 확보되도록 지원한다.

제58조 【장애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 ①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계획, 전보 등 주요 정책수립 시 장애인 교원의 참여와 교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업무지원인력을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인력의 원활한 직무 역할 수행을 위해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 인력에 대한 연수 및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다.
- ④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임용·전보하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근무성적 평정 등 교원정책 추진 시 장애인 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불공정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한다.

부칙

제1조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 【협약갱신】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나 법령의 개정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공동해설서 작성】

교육청은 단체협약 공동해설서 초안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작성한 뒤, 대전교사노조와 의견 조율을 거쳐 유·초·중·고등학교(사립유치원 제외)에 배포한다.

제5조 【이행방법】

- ①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는 필요시 양측의 합의에 의해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계획 및 결과를 정책협의회에서 점검할 수 있다.
- ② 대전교사노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이행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연 1회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대전교사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④ 교육청은 본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공문 시행 등의 방법으로 학교장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에게 안내한다.
- 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및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제6조 【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21. 11. 29.

대전광역시교육감 대전교사노동조합위원장

설 동 호

이 윤 경

II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

전문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라 한다)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본 협약은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더불어,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 이외 관내 타 교원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약 내용 중, 대전교사노조와 합의한 내용보다 교사의 근로조건에 유리한 협약사항은 그 협약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최종 합의된 협약안 중 교육청 관내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적 사항에 한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가 체결한 2020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 제6조에 의거 대전교사노조 및 관내 대전교사노조 조합원에게 적용됨
- 또한, 관내 타 교원노조와 체결한 협약 내용 중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적 사항에 한하여, 대전교사노조와 합의한 내용보다 교사의 근로조건에 유리한 협약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관내 전체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항은 교육청 정책으로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 각 부서 및 학교에서 본 협약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사항을 안내하고 공동해설서 배포

제2조 【협약의 존중】

교육청은 본 협약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교사노조와 협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협약사항을 존중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전교사노조와 협의를 통해 변경함으로써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형성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단체협약 내용을 준수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함

제3조 【조례·규칙의 제·개정】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교사노조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근로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교사노조에서 의견을 제출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4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① 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전교사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관련 법령에 의거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대전교사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② 교육청은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교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공문 시행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단체협약 사항이 교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일 경우, 공문 등을 통해 전 교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안내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본 협약의 내용 중 교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공문 등을 통해 전 교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안내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③ 다음 각호의 조합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복무관련 법령, 예규 및 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와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
 2.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간의 정책협의회
 3. 대의원과 중앙위원으로서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참석
 4. 조합 집행위원으로서 집행위원회 참석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관련 법령 및 본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한 범위 내에서 대전교사노조 활동을 보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관련 법령에 의거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적법한 절차란 노조에서 회의 및 협의회 일시, 내용, 참석자 명단 등 계획을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 모든 복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교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공가, 연가 등의 복무처리의 종류는 해당 법령 및 규정에 따름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④ 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내·외 연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4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내·외 연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수내용, 일시 및 시설이용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신청함
- 학교장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함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⑤ 교육청은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 연수기관에서 신규임용 및 자격연수 과정을 운영할 때 대전교사노조 소개 자료를 배포한다. (신규임용 연수 과정에서는 적정 홍보 시간을 부여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4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 연수기관에서 신규임용 및 자격연수 과정을 운영할 때 대전교사노조 소개 자료를 배포하기 위함
- 신규임용 연수 과정에서는 적정 홍보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 연수기관에서 신규임용 및 1급 자격연수 과정에 대전교사노조 소개 자료 배포 및 신규임용 연수 과정은 적정 홍보 시간 부여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⑥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의 전임자가 임기를 마치고 복귀할 시에는 원 소속교로 복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생활근거지 및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2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대전교사노조의 전임자 해제 시 원소속 학교에 복귀시키고, 결원이 없을 경우 본인의 희망을 참고하여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발령하여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대전교사노조의 전임자 복직 발령시 생활근거지 및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⑦ 교육청은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과 직속기관이 운영하는 기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대전교사노조 홈페이지를 연결되도록 한다.

소관부서	혁신정책과(행정정보담당)	연락처	616-8635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대전교사노조의 홈페이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를 제공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포함) 기관 홈페이지에 대전교사노조 홈페이지 연결을 희망할 경우 관련 링크 주소,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공문 요청
- 대전교사노조 공문 요청에 따라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포함) 홈페이지 배너 연결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⑧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학교 내 게시판 설치를 희망할 경우, 학교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다만, 비방 등 비교육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대전교사노조에서 학교 내 게시판 설치를 희망할 경우, 학교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바람직한 교원 노사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 단, 비방 등 비교육적인 내용은 제외함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대전교사노조의 홍보활동을 위하여 학교 내 게시판 설치를 희망할 경우, 학교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음을 공문 등을 통해 각급학교에 안내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⑨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홍보활동 등 최소한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홍보활동 등의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허가할 수 있음
- * 유인물 배포(신문, 간행물, 소식지 등), 행사안내(유인물) 등을 말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승인이 있는 경우, 대전교사노조의 홍보활동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음을 공문 등을 통해 각급학교에 안내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⑩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최하는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전교사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에서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전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전교사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부서)에 안내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⑪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에서 전임자 허가 신청을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한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제4조 제11항의 협약사항 문구를 2022년 1월 24일 노사 간 합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함

- 대전교사노조 전임자 허가 신청에 따라 관계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하도록 함
-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 교육부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대전교사노조 전임자 허가 신청에 따라 관계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하며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제5조 【노조 활동 중 재해】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의 전임자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법령 개정 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의견을 제출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관련 법령 및 본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교육청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법령 개정 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안정된 조합활동에 기여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교육청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법령 개정 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의견 제출

제6조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수렴】

- ① 교육청은 공무원노조 등 타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단체교섭 요구안 등 관련 사항을 대전교사노동조합에 알리며, 대전교사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시에도 그리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공무원노조 등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단체교섭 요구안 등 관련 사항을 대전교사노조에 알리며, 타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전교사노조와의 단체교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공무원노조 등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단체교섭 요구안 등 관련 사항을 대전교사노조에 알리며, 대전교사노조와의 단체교섭 시에도 단체교섭 요구안 등 관련사항을 타 노동조합에게 공문 등을 통하여 알림

제6조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수렴】

- ② 교육청은 공무원노조 등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소관부서	총무과(공무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56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지방공무원 단체교섭 시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을 청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지방공무원 단체교섭시, 교섭조항 중에서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의견 제출 등 대전교사노조의 의견 청취

제7조 【부당노동행위 예방】

- ①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동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동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의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연수(1급 정교사 자격연수, 교감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동 관련 과목을 개설·운영함

제7조 【부당노동행위 예방】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노동 관련 과목의 개설·운영에 있어 사전에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노동 관련 과목의 개설·운영에 있어 사전에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연수(1급 정교사 자격연수, 교감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동 관련 과목의 개설·운영에 있어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함

제8조 【시설 편의 제공】

- ①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사무실과 최초 사무실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집기, 사무기기 등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대전교사노조에게 사무실과 최초 사무실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집기, 사무기기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노사 관계 도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대전교사노조에게 사무실과 최초 사무실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집기, 사무기기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제8조 【시설 편의 제공】

- ②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총무과(총무담당)	연락처	616-8506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기관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위임사무)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기관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제9조 【조합비 일괄공제】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대상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동의한 조합원에 한하여 대전교사노조에 공제 내역을 통보한다.

소관부서	재정과(경리담당)	연락처	616-870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조합원이 원천징수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하여 대전교사노조에 통보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2
-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제3장(원천징수등 업무 처리기준)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조합원이 소속 기관에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한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
- 원천징수 동의한 조합원만 추출 가능하도록 시스템 반영 요청

제10조 【통지 및 문서 발송 편의 제공】

①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노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소관부서	총무과(민원기록관리담당)	연락처	616-858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노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매년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

제10조 【통지 및 문서 발송 편의 제공】

②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상호 통지한다.

1. 교육감이 통지할 자료

가. 교육청 및 직속 기관의 조직표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

나. 교육통계연보 등 교육청 발간 간행물 목록 (시교육청 기록관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

다. 각급학교 발송 공문 중 대전교사노조가 요청하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여건과 관련된 공문

라.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 공문

마.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

2. 대전교사노조가 통지할 자료

가. 규약의 변경사항

나. 대전교사노조의 임원 현황

다. 대전교사노조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간에 해당 자료를 상호 통지하거나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노사 간 상생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 및 직속 기관의 조직표, 교육통계연보 등 교육청 발간 간행물 목록,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 각급학교 발송 공문 중 대전교사노조가 요청하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여건과 관련된 공문,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 공문을 대전교사노조에게 통지

제10조 【통지 및 문서 발송 편의 제공】

③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교육청에 조합활동과 관련한 문서를 발송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소관부서	총무과(민원기록관리담당)	연락처	616-857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대전교사노조가 조합활동과 관련한 문서를 교육청에 발송하는 경우, 문서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과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대전교사노조가 교육청에 조합 활동과 관련한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업무포털 등을 통해 처리하고, 처리과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제11조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점검, 대전교육정책,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① 협의는 반기별로 1회, 3시간 내로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측 합의에 의해 추가 개최한다.
- ② 정책협의회 대표는 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 혹은 팀장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양측의 합의에 의해 대표위원을 과장급으로 한다.)
- ③ 협의 안건은 상호간에 2주일 이전에 통보한다.
- ④ 정책협의회 결과는 상호 문서로 확인한다.
- ⑤ 정책협의회(교섭이 진행중일 경우 교섭 관련 회의 및 협의)시 상호발언을 기록하여 추후 확인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속기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차후 예산편성 시 반영 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노사협력문화 조성 제고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본 협약 내용은 곧 이행의 내용이므로 각 조항별 내용대로 시행 추진

제3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제1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 ①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원의 사기 저하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하여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주관식) 문항 등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5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과 관련한 교원의 사기 저하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9조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부 차원의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제1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 ②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5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안내 시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를 위한 관련 자료 제공

제1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 ③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처리 단계에서 원자료 열람요청 처리,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 활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관리자인 교감이 직접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5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처리 시,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관리자인 교감이 직접 처리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 처리를 위한 원자료 열람요청 처리,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 활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관리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함

제1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 ④ 교육청은 교원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공무원보수등의 업무 지침」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함

제13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① 교육청은 2급 정교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2급 정교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 유아교육법 제22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2급 정교사가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제13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②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대한 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연수 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대한 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연수 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7조 및 38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
-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 주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의 경우 연수 경비 지원
- 연수 여비는 관련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도록 안내

제13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③ 교육청은 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연수기관에 납부하는 연수경비 교원 1인당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고, 출장(연수) 처리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연수기관에 납부하는 연수경비 교원 1인당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고, 출장(연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7조 및 제38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
- 교원 연수 운영 계획(대전광역시교육청)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특수분야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의 연수 경비는 단위학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 1인당 연수경비' 지원금액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고, 출장(연수) 처리함을 안내

제13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④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는 학교당 일률적인 인원 배정을 지양하고 연수대상자는 연수 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단, 의무연수과정은 예외로 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 시 학교당 일률적인 인원 배정을 지양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예방하고,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연수의 내실화 및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자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제4항 제1호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 시 학교당 일률적인 인원 배정을 지양하고, 연수과정의 내용 및 교원의 희망을 고려하여 연수대상자를 선정할 것임. 단, 의무 연수과정은 예외로 함

제13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⑤ 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주관 연수프로그램 편성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전교사노조는 수요조사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4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연수원 주관 연수프로그램 편성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전교사노조는 수요조사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교육연수원 연수운영규정 제4조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프로그램은 종료 후 설문을 통해 교원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차후 연수 개설시 활용하고 있음
- 대전교육연수원 주관 연수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시,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이 개진 될 수 있도록 대전교육연수원에 안내함

제13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⑥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4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 교원연수 운영 계획(대전광역시교육청)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연수 운영 계획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안내함

제13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⑦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사·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4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사·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유아교육법 제22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생교육 및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사·교감 자격연수는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노력

제13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⑧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자율연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5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기 위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 ⑤항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실시되고, 별도의 보고서가 원칙적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안내

제13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⑨ 교육청은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은 이후에 교사가 희망할 경우, 교과별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일정 기간마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1급 정교사 연수 후 교과별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법 제6장 연수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1급 정교사 연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교사의 희망을 반영하여 교과별 연수를 개설·운영하고자 노력

제13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⑩ 교육청은 전교직원 필수 연수 중 하나인 ‘심폐소생술 연수’의 이론 수업을 온라인 병행 가능토록 안내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실습 수업이 되도록 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양성평등교육담당)	연락처	616-848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코로나19 등의 변수로 인하여 심폐소생술 이론 수업은 온라인으로 병행 가능할 수 있고 학사 운영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교육기관과 일정 협의 후 의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9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계획 안내 시 이론은 원격연수 가능, 실습은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교육기관과 일정 협의 후 실시토록 안내

제14조 【연구 환경 조성】

- ①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 및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장학담당)	연락처	616-8302
------	---------------	-----	----------

해설

-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의 범위 내에서 교사 연구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향상 활동을 지원함

이행계획

- 교실수업 지원 및 장학 기본 계획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연구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함

제14조 【연구 환경 조성】

- ② 교육청은 교원이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으로 하며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5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 제8장(휴가)
-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제6장(복무징계)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함
- 단, 이 경우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으로 하며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음

제14조 【연구 환경 조성】

- ③ 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학습 연구년제가 합리적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5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 변화를 선도하고 연구 의지를 지닌 현장 우수 교사에게 심화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법 제40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의 예산 상황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 학습연구년제가 합리적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제14조 【연구 환경 조성】

- ④ 교육청은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에 교과·학년별 연구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교과·학년 협의회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장학담당)

연락처

616-8302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 등 협력적 수업 연구 모임 활성화를 위해 연구실을 마련하고 학교 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원들의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단위학교에서 교과, 학년협의회 및 각종 협의회 개최를 위한 연구실 설치에 노력하고, 필요한 협의회비를 학교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교실수업 개선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 안내함

제14조 【연구 환경 조성】

- ⑤ 교육청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른 교원의 교육 강사수당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전문성(교육경력)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예산정책담당)	연락처	616-812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전문성(교육경력)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반영하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공무원의 전문성(교육경력)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개정 시 반영되도록 노력함

제15조 【컨설팅 장학】

컨설팅 장학은 학교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며, 장학위원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장학담당)	연락처	616-825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요구와 선택에 따른 컨설팅 장학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기본법 제17조
- 초·중등교육법 제7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은 학교 희망에 따라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며, 학교 교육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안내함

제16조 【연구학교】

- ① 교육청이 자체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 공모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이전(전년도 말)에 완결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장학담당)	연락처	616-8257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이 자체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 공모는 익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 이전에 완결하여 연구·시범학교의 운영이 익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은 연구·시범학교 공모가 익년도 학교교육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제16조 【연구학교】

- ② 교육청은 연구학교 선정심의회를 구성할 때 교원의 경우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한 1인의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장학담당)	연락처	616-8257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은 연구학교 선정심의회를 구성할 때 교원의 경우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하는 1인의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은 연구학교 선정심의회를 구성할 때 교원의 경우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하는 1인의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

제4장 근무조건 향상 및 업무 정상화

제17조 【교원 승진 및 인사제도 개선】

교육청은 미래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원승진체계가 마련되도록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인사의 임용 및 승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2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미래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원승진체계가 마련되도록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인사의 임용 및 승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치등교원 인사관리원칙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원 인사관리원칙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인사의 임용 및 승진 제도 개선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현장의 의견,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마련함

제18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단위 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2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모든 공립학교에서 교내 인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하며, 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하도록 안내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제35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치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제28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제30조, 제31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단위학교에서 인사자문위원회가 교내 인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 되도록 관리자 회의 및 연수 등에서 안내

제18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② 교육청은 각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제35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제28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제30조, 제31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 인사자문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관리자 회의 및 연수 시 안내

제19조 【교원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교육청은 교원 인사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위원이 1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에서 교원 인사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대전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위원 1인이 참여하여 인사관리원칙에 대한 의견수렴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원 인사관리원칙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인사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추천위원 1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전교사노조에 안내

제20조 【전보제도】

- ①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초빙교사제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지침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점검하며 초빙교사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5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 초빙교사 제도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안내 및 점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7조, 제32조 제1항 제8조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31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7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제13조의2 ①항
-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제12조의2 ⑦항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
- 대전광역시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사 초빙 업무 추진 계획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초빙교사제를 적정하게 수행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안내 및 점검
-

제20조 【전보제도】

-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정기 전보 인사발령이 학사일정과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5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정기 전보 인사발령에 따른 학사일정 및 주거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활한 전보 일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원 전보 내신 교(원)감 회의 자료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 교원 전보를 위한 인사관리원칙 시행계획(전보내신 추진 일정 포함)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의 정기 전보 인사발령에 따른 학사일정 및 주거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활한 전보 일정 운영을 위해 노력

제20조 【전보제도】

- ③ 교육청은 성희롱 및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비정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2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성희롱 및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한 비정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제26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제25조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성희롱 및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전보 관련 규정에 따라 전보 실시

제20조 【전보제도】

- ④ 교사가 근무성적평정점의 공개를 원한 경우 공개한다.(본인에 한함)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2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의 근무성적평정점을 공개하여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원 평정편람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원 평정편람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의 근무성적평정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음

제20조 【전보제도】

- ⑤ 교육청은 소속 교원 중 시도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부부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동일시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4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별거로 인한 교원의 고충해소 및 교직의 안정성 도모를 위한 노력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1항
-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학년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제20조 제2항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매년 교육공무원 시도 간 교류(전출입) 및 교환(파견) 근무 계획을 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부부 교원이 동일시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

제20조 【전보제도】

- ⑥ 교육청(교육지원청)은 정기전보 대상자의 학교별·과목별 예상 인원을 내신 희망원 작성 전 까지 공개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5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전보내신서 작성 전 교사 전보의 학교별 수급 상황을 공개하여 학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제20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원 전보 내신 교(원)감 회의 자료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 및 전보를 위한 인사관리원칙 시행계획(전보내신 추진 일정 포함)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정기전보 대상자의 학교별·과목별 예상 인원을 내신 희망원 작성 전까지 공개

- 정확한 정기전보 대상자의 학교별·과목별 예상 인원이 제출되도록 연수시 안내

제21조 【법정 교원 수 확보 및 교육 지원 강화】

① 교육청은 법정 교원 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증원 요청

제21조 【법정 교원 수 확보 및 교육 지원 강화】

② 교육청은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의 인원확충을 통해 1학교 1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양성평등교육·생활교육담당) 체육예술건강과(학교급식담당) 유초등교육과(초등장학담당)	연락처	(보건교사)616-8482 (영양교사)616-8432 (사서교사)616-8258 (전문상담교사)616-848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보건교사) 학생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규 보건 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함
- (영양교사) 영양·식생활 교육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사서교사) 교육부의 배정 사항이나, 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임
- (전문상담교사) 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학교상담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보건법」 제15조 제3항
-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영양교사 배치 등)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7조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의 [별표5]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보건교사) 교원 정원은 교사 총정원제와 연동·운영되므로 교육부에 보건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원 요청
- (영양교사) 교육공무직 영양사 등 결원 반영하여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영양교사 정원 요청
- (사서교사) 교육부 정원배정에 따른 사항인 만큼 교육부와의 협의 등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
- (전문상담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1학교 1교사 배치를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증원 요청함

제21조 【법정 교원 수 확보 및 교육 지원 강화】

③ 교육청은 교사 정원내에서 교사채용이 가능한 영역에 정규교사를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3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사 정원내에서 교사수급 등을 고려한 신규 교사 채용인원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정규교사를 채용하고 있음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사 정원내에서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 배치하도록 노력

제21조 【법정 교원 수 확보 및 교육 지원 강화】

④ 교육청은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할 경우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총무과(비상계획담당)	연락처	616-851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에서 사회복지요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한 업무경감 노력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등 결정)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에서 사회복지요원의 결원 및 신규인원 필요 소요 발생 시 병무청과 협의하여 배치되도록 노력

제22조 【학습지도안의 자율적 작성】

교육청은 학습지도안, 초등 주간학습계획안, 일일 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폐지하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이수 집계표는 수기 작성하지 않는다. 또한 연간 지도계획은 교과, 학년 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장학담당)	연락처	616-830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실수업 개선 지원 계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함
 - 학습지도안, 초등 주간학습계획안, 일일 교육계획안의 형식과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결재하지 않으며, 이수 집계표는 수기 작성하지 않음
 - 연간 지도 계획은 교과, 학년 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

제23조 【학교 업무 정상화 1】

① 교육청은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담임교사는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 담임교사는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2022학년도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조성 운영계획(교육정책과-168. 2022. 1. 6.)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에 안내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업무경감을 위한 사업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담임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학교 교무지원 TF팀과 교무업무지원팀 구성·운영 안내

제23조 【학교 업무 정상화 1】

② 교육청은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는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하고, 기타 장부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비치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비법정 장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비치하도록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2022학년도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 조성 운영계획(교육정책과-168. 2022. 1. 6.)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법정 장부 이외의 장부 활용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 조성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안내

제23조 【학교 업무 정상화 1】

③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몰, 계속 추진, 확대, 신규 사업 추진 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사업의 일몰, 계속 추진, 확대, 신규 사업 추진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2022학년도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조성 운영계획(교육정책과-168. 2022. 1. 6.)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정책사업 총량제·일몰제 지속 실시
- 학교업무경감 모니터단 및 현장의견제안(업무담당자 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 등)을 통해 학교 현장 의견 수렴

제23조 【학교 업무 정상화 1】

- ④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학원 운영시간을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한다.

소관부서	교육복지안전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616-881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조례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운영시간을 지도·감독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실시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관계 법령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운영시간 정기 및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미이행 학원에 대해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실시

제23조 【학교 업무 정상화 1】

- ⑤ 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공문 생산을 억제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공문에 표시하도록 하며, 보고를 요하는 공문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를 두고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바람직한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 조성을 위한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2022학년도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 조성 운영계획(교육정책과-168. 2022. 1. 6.)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공문 생산 억제를 위해 공문서 총량제 및 모니터링 실시
-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청은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공문의 생산을 억제 하도록 지도함
-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문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에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공문에 표시하여 보고 받지 않도록 안내함
- 보고를 요하는 공문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를 두고 발송하도록 안내함

제23조 【학교 업무 정상화 1】

- ⑥ 교육청은 국회·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급적 이미 구축된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국회·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가급적 이미 구축된 교육 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 일부 항목 추가, 조사기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료 요구 할 수 있음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2022학년도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조성 운영계획(교육정책과-168. 2022. 1. 6.)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국회·시의회 등이 자료를 요구할 시 이미 구축된 EDS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조성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기관 (부서)에 안내함

제24조 【학교 업무 정상화 2】

- ① 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전보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행정과(공무직원관리담당)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682 616-820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공무직원의 전보로 각급학교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업무의 분장)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무지원인력 전보 시기에 “전보내신서 제출 안내” 공문에 근무지 사무분장 동의를 전제로 희망학교에 전보내신 제출하도록 안내 추진
- 학교 내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자 기관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공무직원의 전보로 인하여 각급학교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학교장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안내 추진

제24조 【학교 업무 정상화 2】

②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강사, 외부인력 계약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교육청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위탁운영자 1차 제안서심사 지원으로 계약 업무가 간소화되도록 한다.
2. 교육청은 강사, 외부인력을 활용한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사업 추진 시 계약 및 회계 관련 업무지원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교육청은 학교장이 학교여건을 고려하고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관련 업무분장을 실시하되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리자 대상 각종 회의 및 연수 시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단위학교의 강사, 외부인력 계약 및 회계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간소화와 지원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함. 학교의 업무분장시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리자 대상 각종 회의 및 연수시 홍보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2022학년도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조성 운영계획(교육정책과-168. 2022. 1. 6.)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 강사 1차 제안서 심사를 교육청에서 실시

- 강사, 외부인력을 활용한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사업 추진시 계약 및 회계관련 업무지원자료를 제공하도록 기관(부서)에 공문으로 안내
- 학교장이 학교여건을 고려하고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관련 업무분장을 실시하도록 해당내용을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조성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관리자 대상 회의 및 연수 시 홍보할 수 있도록 기관(부서)에 공문으로 안내

제24조 【학교 업무 정상화 2】

- ③ 교육청은 학교의 정보화 물품의 구입, 무선망 구축·유지관리, 유선망 개선 사업의 계약·유지관리를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과학직업정보과(교육정보담당)	연락처	616-8377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정보화 사업의 통합 추진을 통해 학교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V. 학교회계 예산 운용, 3. 예산의 집행, 바. 물품 구매 시 통합 계약 활성화)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정보화 물품의 구입 시 통합구매가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구매를 실시함
- 학교의 교육용 무선망은 교육청에서 매년 각급학교에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량을 파악하고, 통합 발주하여 구축 및 유지관리 실시함
- 학교의 유선망(교육망) 전용회선 사용료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함

제24조 【학교 업무 정상화 2】

- ④ 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추진시 개별학교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대안교육담당)	연락처	616-8475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추진 시 개별학교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제5448호, 2020.4.3. 일부개정]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정산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학교는 학년말인 2월 중순에 학교 회계 정리 추정 편성 및 전·편입생 등록 등에 대한 업무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교복 정산서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 (2020. 2월 중순→2021. 2월말)하여 학교 업무 부담 완화
- (운영요령 사전 안내) 학교에서 교복 업무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교복 절차 추진 시기를 다른 업무와 중복되는 것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주관 구매요령」 안내 시기를 앞당겨(2021.6월 중순→2022.4월 중순) 학교 업무 부담 완화

제25조 【학교 업무 정상화 3】

① 교육청은 각종 외부행사에 교원, 학생, 학부모 동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청의 각종 외부행사에 교원, 학생, 학부모의 강제 동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2022학년도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조성 운영계획(교육정책과-168, 2022. 1. 6.)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각종 외부행사에 교원, 학생, 학부모의 동원이 최소화 되도록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조성 운영 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기관(부서)에 안내

제25조 【학교 업무 정상화 3】

② 교육청은 학교자생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에 자생적으로 조직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지원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혁신미래교육 2.0 기본계획 (2020. 2. 26.)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생자치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본 내용을 포함한 공문 시행
- 2021. 12. 29. 시행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학부모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제25조 【학교 업무 정상화 3】

③ 교육청은 학교장이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여 결재과정을 간소화하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위임 전결 사항을 확대하여 업무처리단계를 간소화하도록 안내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2022학년도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조성 운영계획(교육정책과-168. 2022. 1. 6.)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위임 전결 사항 정비와 결재과정 간소화를 위해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조성 운영 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기관(부서)에 안내
- 학교업무경감 컨설팅시 해당학교의 위임 전결 관련 컨설팅 실시

제25조 【학교 업무 정상화 3】

④ 학교 교육계획서와 교육과정계획서를 학교 특색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과정담당)	연락처	616-822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 교육계획서 및 교육과정계획서의 작성 시 학교 특색에 따른 분리 또는 통합의 자율성 보장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1-248호)
- 대전광역시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 관리자 및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연수 시 별도로 안내하겠음

제25조 【학교 업무 정상화 3】

- ⑤ 교육청은 학교장이 방학 중이나 토요일(재량휴업일 등)에 학교 운영상 근무가 필요할 경우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여 근무일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2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장이 방학 중이나 토요일(재량휴업일 등)에 학교 운영상 근무가 필요할 경우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일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함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방학 및 휴업일 중 학교 운영상 근무가 필요할 경우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일 등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

제25조 【학교 업무 정상화 3】

- ⑥ 수기로 작성하는 근무상황카드(출근보조부) 또는 출퇴근 시간 기록부는 폐지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2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수기로 작성하는 근무상황카드(출근보조부), 출퇴근 시간 기록부를 폐지하기 위함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수기로 작성하는 근무상황관련 서류를 폐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제25조 【학교 업무 정상화 3】

- ⑦ 교육청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업무를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업무를 지역대로 이관하도록 노력한다.
- ⑧ 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업무 가산점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체육교육담당)

연락처

616-8409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단체관련 업무는 교원의 자발적 참여 및 희망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업무증가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 8항, 제29조 1항, 2항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청소년단체 가입 학교에서는 반드시 지도교사의 희망을 고려하여 이행되도록 공문으로 안내
-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 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 청소년단체 연구대회 참여는 희망하는 교사가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
-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추진되는 활동의 선택은 학생과 지도교사의 희망에 의해 실질적 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 공문으로 안내

제25조 【학교 업무 정상화 3】

- ⑨ 교육청은 복수담임제도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복수담임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교원 의사를 반영하여 담임 업무 분장을 정하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3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복수담임제도 운영시 담임교사 업무에 대한 규정 또는 기준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마련하되, 학교구성원의 협의 및 교원 의사를 반영하여 지정함을 안내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2012. 8.)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복수담임제도 규모를 점차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복수담임제도 운영시 교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담임업무 분장을 정하도록 안내

제25조 【학교 업무 정상화 3】

- ⑩ 개인 봉사활동계획서 사전 승인은 봉사활동의 의미를 구현하는 교육적 차원의 지도 목적으로 운영되며, 교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학교 사무 전결 규정을 담임 전결로 개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생활교육담당)	연락처	616-8465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정규 수업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을 담임 전결로 운영하도록 권장하여 개인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지원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생봉사활동 기본계획에 본 내용을 포함한 공문 시행

제25조 【학교 업무 정상화 3】

- ⑪ 학생 상담기록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활용하고 따로 결재하지 않는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생활교육담당)	연락처	616-8464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에 포함되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담 외의 학생상담기록은 자율적으로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 제329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9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위(Wee)프로젝트 운영 계획
- 진로교육법 제9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에 포함되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담 외의 학생 상담기록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활용하고 따로 결재하지 않음
- 중·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진로상담 기록을 따로 결재하지 않음. 다만, 법령에 따라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인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진로상담총괄표」는 예외로 함

- 전문상담교사의 기록은 나이스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으며, 상담내용은 비밀원칙이므로 결재를 하지 않음
- 모든 학생 상담은 비밀유지 원칙으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외 조항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침이 필요가 없음

제26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1】

-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결재권자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 복무를 승인하고, 사전 대면보고를 지양하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각급학교의 결재권자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 복무를 승인하고, 사전 대면 보고를 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35호)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 복무를 승인하고, 사전 대면보고를 지양할 수 있도록 안내

제26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1】

- ② 새학년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준비 기간 복무처리에서 휴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출근을 금지한다. 또한 휴직자가 출근할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과정담당)	연락처	616-822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새학년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준비 기간 복무처리에서 휴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출근을 금지하며 휴직자가 출근할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해당 교원에 대한 기관장의 정당한 출장 명령 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지급함
-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 계획 안내 시 반영하여 안내하겠음

제26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1】

- ③ 교육청은 교사(유·초·중등·특수·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의 계약제 교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연가·병가·연수 등의 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5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를 운영하여 수업 결손을 막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간제 교사(유·초·중등) 인력풀제 운영
-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가 학교 현장에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

제26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1】

- ④ 교육청은 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1월 이상 결원 발생 시에는 계약제교원 인력풀을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3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간제교사 인력풀제를 운영하여 기간제교사 채용시 인력풀을 활용할 때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운영 및 인력풀활용시 공고절차 생략 가능 안내

제26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1】

- ⑤ 교육청은 부득이 해당 학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적정액의 보결수업수당을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교회계 편성 및 집행 지침에 의거 단위학교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보결 수업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정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당 지급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거 단위학교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결수업을 담당할 교원에게 지급
- 보결수업수당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내

제26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1】

- ⑥ 교육청은 교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교사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는 교사배치의 유연성 증진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기반 조성 및 육아·간병·학업·사회적응 등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나, 교원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임용)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제26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1】

- ⑦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혁신정책과(행정정보담당)	연락처	616-863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매년 개인정보보호 업무편람 안내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지도

제26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1】

- ⑧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소관부서	혁신정책과(행정정보담당)	연락처	616-863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K-에듀파인(업무관리) 이용자 지원을 위한 사용자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 현장의 의견(K-에듀파인 사용자지원서비스 등)을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K-에듀파인 업무관리 협의체 협의회를 통해 개선 사항 반영

제27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2】

① 교육청은 직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급식담당)	연락처	616-8432
	유초등교육과(초등장학담당)		616-8258
	민주시민교육과(생활교육담당)		616-8464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영양교사)** 영양교사 직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 지원하도록 노력함
-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직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 지원하도록 노력함
- **(사서교사)** 사서교사 직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 지원하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 교육부 훈령 제329호 「위(Wee) 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020. 3.)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영양교사)** 매학년도 학교급식기본계획 수립 시 영양교사 직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안내함
- **(전문상담교사)** 매학년도 위(Wee) 프로젝트 운영 계획 수립 시 전문상담교사 직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안내함
- **(사서교사)** 매학년도 학교도서관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사서교사 직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 지원하도록 안내함

제27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2】

② 공문 등 공적 문서 작성 시, 각 직종별 명칭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에 안내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	-----	----------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공문 등 공적 문서 작성 시, 각 직종별 명칭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산하기관 및 각급학교에 안내

제5장 교육여건 및 교육 활동 지원

제28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청은 일부 과밀학급의 학습여건 개선과 함께 대규모 학교의 학습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행정과(학생배치담당)	연락처	(초) 616-8664 (중) 616-8665 (고) 616-866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유지하여 과밀학급의 학습여건 개선과 과대학교의 학습 및 생활지도 어려움 해소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급편성 기준 및 배정인원 조정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 추진 노력

제29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①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장학담당)	연락처	616-825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사서교사의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 사항이나, 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사서교사의 정원 확보를 통해 사서교사 미배치교에 배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단, 사서교사의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배정에 따른 사항인 만큼 정원확보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의 등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제29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 ② 교육청은 사서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창의적인 학교 도서관 운영을 위해 매년 학교도서관 및 독서 관련 직무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장학담당)	연락처	616-825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학교도서관 및 독서 관련 직무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음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
- 2021년 학교도서관발전시행계획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신규 사서교사 직무연수, 사서교사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학교도서관발전시행계획에 사서교사 직무연수 추진 사항을 반영하겠음

제29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 ③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환기·채광·조명·온습도 조절을 위한 시설·설비 가이드(권장안)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장학담당)	연락처	616-825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시설·설비 가이드(권장안)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도서관 시설·설비 관련 사항이 반영된 매뉴얼을 각급학교에 안내

제29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 ④ 각 단위학교의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장학담당)	연락처	616-825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겠음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도서관 담당부서에 전문인력(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도록 노력

제29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 ⑤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서관 담당 교사에 대한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에 안내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장학담당)	연락처	616-825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상황을 고려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의 사무분장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에 안내하겠음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2022년 학교도서관발전시행계획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상황을 고려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의 사무분장이 이루어지도록 각급학교에 안내

제29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 ⑥ 교육청은 국가전자도서관 원문정보를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장학담당)	연락처	616-8258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은 지식정보 접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자도서관 원문정보를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2021년 학교도서관 발전시행계획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국회도서관 협약 체결(2020. 6.)에 따라 신청 학교는 국회전자도서관의 학술정보 및 원문구축 자료를 학교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음(초·중·고 192교)
- 국회도서관의 원문정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미신청 학교에 추가 신청 관련 사항을 각급학교에 안내

제30조 【교수·학습과정】

- ①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과정담당)	연락처	616-822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1-248호)
- 대전광역시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관리자 및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연수 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민주적 조직·운영에 대하여 안내하겠음

제30조 【교수 · 학습과정】

- ② 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급별위원회 포함)를 구성할때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하는 위원 1~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과정담당)	연락처	616-822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과정위원회(학교급별위원회 포함) 구성 시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하는 위원 1~2명 참여를 통한 교육과정위원회의 민주적 조직 및 운영을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1-248호)
- 대전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규칙(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691호)
- 대전광역시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대전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학교급별 소위원회 포함) 구성 시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제30조 【교수 · 학습과정】

- ③ 교육청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간 교원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수전공,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교과목간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수 지원을 하고자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법 제6장 연수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복수전공(부전공)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과원이 발생(예상)된 교과목 교사의 신청을 받아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수 추진

제30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 ④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과원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과원교사 발생 시 복수(부) 전공연수, 과목변경 등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과원교사 발생시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해 복수전공계획 수립 및 시행, 임용과목외 교사 자격 소지 교사에 대한 임용과목 변경 계획 등 교사 희망에 의한 과원 해소 방안 수립 및 실시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 「교육공무원법」 제6장(연수)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과원 예상 교과에 대해서 신규교사 임용인원 산정시 반영하고, 복수(부)전공 연수 및 교육대학원에서 복수전공 이수 권장

제30조 【교수·학습과정】

- ⑤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 학교는 정규수업을 마치고 훈련에 임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체육교육담당)	연락처	616-840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생 운동선수가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신체적·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장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 학교는 모든 교육과정(수업, 학급활동, 학교행사 등)을 충실하게 이수한 후 훈련에 임하도록 해당학교에 안내
- 상반기·하반기 학교 운동부 점검 시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 현황을 점검

제30조 【교수 · 학습과정】

⑥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장학담당)

연락처

616-8255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초등학교의 학생평가는 성취기준 · 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생의 성장 및 발달 정도에 중점을 두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부 훈령 제365호 [별표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2021학년도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과정 중심 학생평가 정착에 대하여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으며, 2021학년도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유초등교육과-1308, 2021. 2. 1.)의 제2조 제4항에 반영함
- 2022학년도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지속 반영 및 학교로 안내

제31조 【교구 및 교과서 선정】

교구 및 교과서 선정은 교과협의회 추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걸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고교학점제담당)

연락처

616-8239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구 및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구 선정 시 학교 교구선정위원회 등 협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안내
- 교과서 선정 시 교과협의회 추천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지도
-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계획을 수립하고, 교과서 선정 관련 연수 자료 안내

제32조 【학급운영비】

학급예산 중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집행·편성되도록 지도하고 성질상 개선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과정담당)	연락처	616-822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급운영비 개선급 운영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립학교회계 규칙」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개선급 운영 범위에 대해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반영하여 학교로 안내

제33조 【민주적인 학교 운영】

① 교육청은 단위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직원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은 교직원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견이 수렴되도록 교직원회의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혁신미래교육 2.0 기본계획(2020. 2. 26.)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각급학교에 토론이 있는 교육가족의 날 운영 안내
-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 사례집 제공
-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에 대한 교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 운영

제33조 【민주적인 학교 운영】

②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혁신정책과(교육력향상담당)

연락처

616-8623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건 상정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및 업무편람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관계자 연수, 컨설팅 지원으로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제34조 【방과후학교】

①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교사가 실시하도록 하며,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형태의 교과 보충수업, 선행교육 및 성적에 따른 일부 학생에 대한 예산지원 등 비교육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7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방과후학교의 운영이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 참여를 지양하도록 하고, 희망 교사가 실시하도록 지침을 통해 지도함
-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형태의 교과 보충수업, 선행교육 및 성적에 따른 일부 학생에 대한 예산지원 등 비교육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2022 대전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대전교육2022-2)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학교 안내 및 컨설팅 실시

제34조 【방과후학교】

- ②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실시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7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안내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2022 대전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대전교육2022-2)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학교 안내 및 컨설팅 실시

제34조 【방과후학교】

- ③ 교육청은 초·중학교의 경우 경시대회와 특목고 진학, 각종 시험을 목적으로 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 및 경시대회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7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방과후학교의 운영이 초·중학교의 경우 경시대회와 특목고 진학, 각종 시험을 목적으로 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 및 경시대회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2022 대전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대전교육2022-2)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학교 안내 및 컨설팅 실시

제34조 【방과후학교】

- ④ 교육청은 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사회 돌봄기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 행사 시 홍보하도록 안내하며,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업무가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6, 8207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지역사회 돌봄기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 행사 시 홍보하고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를 돌봄 전담사에게 이관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2022 대전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대전교육2022-2)
-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대전교육2022-4)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학교 안내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안내

제34조 【방과후학교】

- ⑤ 교육청은 단위학교 교원의 돌봄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교육청은 돌봄인력풀을 확대하여 구성·운영하도록 노력한다.
 2. 다양한 사유에 의해 돌봄전담사 대체인력 확보시간이 부족한 경우 확보기간(3일 이내)에 학부모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3.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위탁운영자 1차 제안서 심사를 지원한다.
 4. 기 채용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위탁운영자를 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위탁운영자로 활용 시 계약서만 별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6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초등돌봄교실 담당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본 협약사항 내용 추진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안내(돌봄전담사에게 돌봄관련 행정업무 이관)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안내(인력풀 구성, 자원봉사자 활용, 제안서심사 등)
- 2022 초등돌봄교실 실무 지원자료 배부
-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배부

제34조 【방과후학교】

⑥ 교육청은 방학(토요일 등) 중 방과후학교 관리를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하고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7
------	---------------	-----	----------

- 방학(토요일 등) 중 방과후학교 관리를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하고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2022 대전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대전교육2022-2)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학교 안내 및 컨설팅 실시

제35조 【자율학습 등】

① 교육청은 자율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경비를 징수하거나 불법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진로진학담당)	연락처	616-831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자율학습은 단위학교에서 교육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계획·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경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지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매년 일반고 자율학습 운영에 관한 지침을 공문으로 학교에 안내하여 희망자 중심의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함
- 장학지도 등을 통하여 자율학습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려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 금지, 자율학습실 이용 명목의 불법찬조금 징수 금지 등) 지도함

제35조 【자율학습 등】

② 교육청은 중·고등학교의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초과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진로진학담당)	연락처	616-831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중·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을 지도한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321호) 제6장 제15~17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2319호) 제5장 제31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초과근무 운영 및 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함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시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시행함

제36조 【감사제도】

① 교육청은 학교 감사 시 교원의 교무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는 가급적 교육전문직이 담당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감사관(종합감사담당)	연락처	616-816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감사를 통한 교육활동 지원과 감사의 신뢰성 확보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호(감사담당자의 임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감사담당자의 자격)
-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의 편성)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청·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분야 감사 시 교육전문직 참여

제36조 【감사제도】

②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안내한다.

소관부서	감사관(종합감사담당)	연락처	616-816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사 결과를 공개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9조
-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 제23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감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제37조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제회의 이사회 및 제5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소관부서	재정과(사학지원담당)	연락처	616-872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결정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
-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21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안전공제회보상심사위원회 구성 시 대전교사노조에 의견 제출 안내

제38조 【교육예산 편성 운영의 합리화】

- ① 교육청은 학교예산 편성 시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예산관리담당)	연락처	616-813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회계 예산편성시 교직원의 참여 보장과 투명성 제고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2항
- 「대전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2조 제2항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제출받아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반영하여 학교로 안내

제38조 【교육예산 편성 운영의 합리화】

- ② 교육청은 학교예산 및 결산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공개 방법으로 교직원, 학부모에게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공개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예산관리담당)	연락처	616-813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예·결산 정보의 공개를 통한 학교회계 투명성 제고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회계 예·결산 공개 여부 및 기한 등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반영하여 학교로 안내

제39조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① 공립유치원의 교원 정원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유아교육담당)	연락처	616-8273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치원 교원 정원 확보 및 배치를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유아교육법 제20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매년 신·증설계획을 반영하여 교육부에 정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 요청

제39조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② 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초등학교 신설 시 유치원을 병설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행정과(학생배치담당)	연락처	616-8667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육 수요자가 있는 공립유치원에 신·증설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신설 시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도록 노력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유아교육법 제9조, 제9조의2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육 수요자가 있는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신설 시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도록 노력함
- 병설유치원 미 설치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제39조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 ③ 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의 행정업무 경감과 업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유아교육담당)	연락처	616-827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유치원 교원의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유치원 내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치원 구성원 간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유아교육법 제21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유치원업무 길라잡이 개발 및 보급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지원을 위한 노력

제39조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 ④ 교육청은 초등학교 청소인력 기준 책정 시 병설유치원의 공용사용공간을 청소범위에 포함하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행정과(공무직원관리담당)	연락처	616-8687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초등학교 청소실무원 배치 시 병설유치원의 공용사용공간을 청소범위에 포함하여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노력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청소실무원 배치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배치 인력 근무 범위에 병설유치원 공용사용공간이 포함되어 있음(병설유치원 별도 정원 없음)
※ 청소실무원 배치기준

- 단설 유·초·중·특수·각종학교: 교당 2명 이내(BTL학교 제외)
- 행정과 소관 노무 연수 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부속된 시설로 초등학교 시설 관리 범위에 당연 포함됨'을 설명 및 안내
- ※ 단, 공용사용공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범위로 제한함

제39조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⑤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소관부서	행정과(학생배치담당)	연락처	616-8665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은 유아배치 여건을 감안하여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은 유아배치계획을 수립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를 하향 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

제39조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⑥ 교육청은 유치원평가위원회에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유치원교사 1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유아교육담당)	연락처	616-827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에서 유치원 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개선을 위해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유치원 교사 1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유아교육법 제19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6항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유치원평가위원회 구성 시 해당 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에 안내

제39조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⑦ 교육청은 유치원의 유아학비 업무 중 분기별 청구 및 정산의 업무와 무상급식비 교부에 따른 업무에 대해 원장이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고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관련 업무분장을 실시하도록 하되,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리자 대상 각종 회의 및 연수 시 홍보하고, 유아학비시스템 불편사항 개선 건의 등 청구·정산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재정과(세입·재산담당)	연락처	616-8715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유아학비 분기별 청구·정산 및 무상급식비 교부 업무가 합리적·민주적 업무분장을 통해 실시되고, 유아학비시스템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유치원 교육 여건을 개선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유아학비 청구·정산 업무 및 무상급식비 교부 업무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고, 교직원들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업무분장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관리자 대상 회의를 통하여 안내하고, 공문 시행 시 관련 부서간 협조를 통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
- 유치원에 의견을 청취하여 교육부·한국교육학술연구원 등에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e-유치원)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

제39조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⑧ 교육청은 방과후과정 특성화강사 채용절차 등을 현장에 안내하여 유치원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유아교육담당)	연락처	616-8276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유치원교사의 방과후과정 특성화 강사 채용 등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항
- 유아교육법 제13조 제4항

- 2022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6733, 2021. 12. 31.)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유치원교사의 방과후과정 특성화강사 채용업무 경감을 위해 유치원업무 길라잡이 개발 및 보급으로 채용 업무 절차 안내

제39조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 ⑨ 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의 영양, 보건교사가 유치원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 수당 지급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급식담당)	연락처	616-8432
	민주시민교육과(양성평등교육담당)		616-8482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제39조 제9항의 협약사항 문구를 2022년 1월 24일 노사 간 합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함
- **(영양교사)**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학교급식법」에 따른 유치원 급식업무 겸임을 위한 수당 지급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함
- **(보건교사)**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에 따른 유치원 보건업무 겸임을 위한 수당 지급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11]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영양, 보건교사의 겸임 수당 지급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의견수렴 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함

제40조 【보건교육 활성화】

- ① 교육청은 학교에서 보건교육실을 설치 및 이전할 경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실 근거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보건담당)	연락처	616-8439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효율적인 응급처치 대응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를 위하여 보건실 옆에 보건교육실 별도 설치를 위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의 유휴교실 등을 이용하여 보건교육실 설치 및 이전의 경우, 보건실 근거리에 보건교육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

제40조 【보건교육 활성화】

- ② 교육청은 교외에서 주최하는 체육활동, 교육활동의 안전요원으로 지원하는 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양성평등교육담당)	연락처	616-848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은 교외에서 주최하는 체육활동, 교육활동의 안전요원으로 지원하는 보건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은 교외에서 주최하는 체육활동, 교육활동의 안전요원으로 지원하는 보건교사 수당 지급 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준용

제40조 【보건교육 활성화】

- ③ 교육청은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보건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양성평등교육담당)	연락처	616-848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배치하여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보건법」 제15조 제③항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제③항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

제40조 【보건교육 활성화】

④ 교육청은 1교 1명의 보건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양성평등교육담당)

연락처

616-8482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배치하여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보건법」 제15조 제③항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제③항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
-

제40조 【보건교육 활성화】

⑤ 교육청은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기 전까지 유치원 업무를 겸임하는 보건교사에게 겸임 수당을 지급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고, 유치원 학급수를 고려한 인사급지 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양성평등교육담당)

연락처

616-8482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유치원 업무를 겸임하는 보건교사에 대한 겸임 업무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겸임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원아의 원활한 건강관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2022년도 초등교원 인사관리 원칙」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현재 유치원 겸임 보건교사 없으나, 겸임을 할 경우 교육부에 건의 예정
 - 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제개정 시 유치원 학급수를 고려한 인사급지 조정을 위해 노력
-

제40조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지원】

⑥ 교육청에 보건장학사를 배치하여 보건교육 및 감염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도록 검토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양성평등교육담당)

연락처

616-8482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보건업무의 확대와 전문화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현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현재 교육청에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장학사가 배치되어 있음

제41조 【영양교육 활성화】

①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육 및 비상시 급식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급식담당)	연락처	616-843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육 및 비상시 급식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를 노력함으로써 학교급식 담당 조직 및 학교 현장 지원 강화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급식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영양교사 배치 등)
- 교육부 2021 학생건강증진정책방향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정원 요청

제41조 【영양교육 활성화】

② 교육청은 43학급 이상 급식학교의 효율적 업무관리 및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영양교사 추가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급식담당)	연락처	616-843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43학급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추가인력 배치를 노력함으로써 효율적 업무 관리 및 철저한 위생관리로 학교급식 질 향상에 기여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영양교사 배치 등)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의 [별표5]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43학급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정원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정원 요청

제41조 【영양교육 활성화】

③ 교육청은 1교 1명의 영양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급식담당)	연락처	616-843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영양·식생활 교육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영양교사 배치 등)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의 [별표5]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공무직 영양사 등 결원 반영하여 영양교사 정원이 배정되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정원 요청

제41조 【영양교육 활성화】

④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하는 영양교사 대표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급식담당)	연락처	616-8436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구성 시,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하는 영양교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급식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구성 시,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하는 영양교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함

제41조 【영양교육 활성화】

- ⑤ 교육청은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 급식 작업 환경 개선과 환경친화적 급식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급식담당)	연락처	616-8435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코자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2021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교육부 2020. 12.)
-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급식기구 교체 예산 지원
-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 및 지원하도록 노력

제41조 【영양교육 활성화】

- ⑥ 교육청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바른 식생활 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급식담당)	연락처	616-843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바른 식생활 교육 선도학교 운영으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2021학년도 학교급식기본계획

- 2021학년도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계획(바른 식생활 선도학교 운영)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바른 식생활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

제41조 【영양교육 활성화】

⑦ 교육청은 다양한 체험형 영양·식생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급식담당)	연락처	616-8432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다양한 체험형 영양·식생활 교육으로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2021학년도 학교급식기본계획
- 2021학년도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계획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계획에 다양한 체험형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안내

제42조 【특수교육 정상화】

①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특수교육담당)	연락처	616-8282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대전특수교육 운영 계획에 보조인력의 역할을 포함하여 기관(부서)에 안내

제42조 【특수교육 정상화】

- ②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종합대책 수립 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특성으로 인한 교사의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에 대해 교사 보호조치 및 치유회복'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지원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특수교육담당)	연락처	616-828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특성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를 지원하여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대전특수교육원 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연수를 개설하여 운영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특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특수교육 업무담당자와 교육활동보호 담당부서가 협력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함

제42조 【특수교육 정상화】

- ③ 교육청은 특수순회교사 정원을 확보하여 특수교사가 출장이나 연(병)가 및 특별휴가 등을 갈 경우 해당 학교에 특수교육 순회교사를 점진적으로 지원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특수교육담당)	연락처	616-828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특수교사가 출장이나 연(병)가 및 특별휴가 등을 갈 경우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순회교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특수학교(급) 지원 순회교사 6명을 확보하여 특수교사가 출장이나 연(병)가 및 특별휴가 시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관(학교)에 공문 안내(대전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231, 2021. 2. 23.)

제42조 【특수교육 정상화】

- ④ 교육청은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 관련 보호자 연수 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년 1회 이상 운영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특수교육담당)	연락처	616-8282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보호자 연수 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좌 내용 포함 실시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매년 대전특수교육원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학부모 연수 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대전특수교육원 교육운영과 -2609, 2021. 11. 16.)

제42조 【특수교육 정상화】

- ⑤ 교육청은 교육부 ‘장애학생인권보호종합대책’(2018. 12. 19.)에 따라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및 상담사 자격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장애 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특수교육담당)	연락처	616-8282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특수교사 및 상담사 자격 소지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위기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중재 및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3과제 장애학생 행동지원 체계 구축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특수교사 법적 정원 확보를 위한 교육부 협의 추진
- 특수교사 중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 배치를 통한 상담업무 추진 중(특수학교 6개교 모두 Wee 클래스 설치 및 자격증 소지 교사 배치)

- 대전특수교육원 중심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전문가 과정 양성 프로그램 운영(대전특수교육원 교육운영과-1276, 2021. 6. 17.)

제42조 【특수교육 정상화】

- ⑥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생활 연령 및 수행 수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전환 교육과정을 마련하며, 진로전담교사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특수교육담당)	연락처	616-828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생활 연령 및 수행 수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전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진로전담교사 운영계획을 수립함
-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장애학생의 진로역량 증진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 진로교육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대전특수교육 운영 계획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학교별 전문화 및 특성화된 진로·직업교육 과정 운영 지원
- 진로전담교사 운영 매뉴얼 개발 정책 연구 완료(2019년) 및 부전공 연수 추진
- 특수학교 내 진로전담교사 배치 완료 및 학교교육계획 내 업무분장 명시 안내

제42조 【특수교육 정상화】

- ⑦ 교육청은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학교 및 시청각장애 특수 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지침을 안내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특수교육담당)	연락처	616-828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학교 및 시청각장애 특수 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과 운영지침을 안내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계획 안내
- 대전시청각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계획 안내

제42조 【특수교육 정상화】

⑧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체험학습(수영실기 교육, 수련활동 등) 시 자원봉사자 등 인력풀을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특수교육담당)	연락처	616-828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대전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보조인력의 역할을 포함하여 기관(부서)에 안내

제43조 【전문상담교사의 근무 조건 향상】

①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상담 내실화를 위하여 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생활교육담당)	연락처	616-846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상담인력 미배치 학교의 위기학생 진단·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증원 요청함

제43조 【전문상담교사의 근무 조건 향상】

- ② 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생활교육담당)	연락처	616-846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실시를 위해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 제329호 제7조(연수 및 자문)
- 교육공무원법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위(Wee)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한국교육개발원)과 시교육청 주관 연수, 전국 연수기관을 통한 재교육 등의 수요자 맞춤형 연수를 지원함

제43조 【전문상담교사의 근무 조건 향상】

- ③ 교육청은 Wee센터에 상담장학사 배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배치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생활교육담당)	연락처	616-846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시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에 설치된 위(Wee)센터의 학교폭력, 자살 등의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 등과 관련된 체계적인 업무 수행과 단위학교·교육청과의 유기적인 소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 제329호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현재, 시교육청 전문상담장학사가 배치되어있으며, 지속적으로 동·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직원 배치를 위해 노력할 것임

제44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① 학교운영위원회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혁신정책과(교육력향상담당)	연락처	616-862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및 업무편람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안내하고 지도함

제44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②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수업 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인정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담당)	연락처	616-845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보급을 통한 교육 활동 지원으로 민주시민 양성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대전광역시조례 제5796호, 2021. 12. 29. 제정]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민주시민교육 각종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력함

제44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③ 초, 중등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자율연수, 연구년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담당)	연락처	616-845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대전광역시조례 제5796호, 2021. 12. 29. 제정]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를 포함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안내

제45조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및 규제 등】

① 교육청은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학교에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1. 연 1회 이상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교육청의 공식 창구의 마련
4.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련기관 신고 및 상급기관에 보고
5.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정기전보 신청기간 전이라도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양성평등교육담당)	연락처	616-848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교육 현장 지원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2022학년도 중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연 1회 이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이행 점검(하반기)
- 성폭력(성희롱) 예방 추진계획 수립 자료집계 점검(상반기)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교육청의 공식 창구의 마련(양성평등교육팀)
-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 신고 및 교육청에 보고 사항 안내
- 성희롱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정기전보 신청기간 전이라도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
-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전보할 수 있도록 노력

제45조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및 규제 등】

- ② 교육청 주관 교장, 교감 등의 자격연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 교육 시간을 1시간 이상 확보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양성평등교육담당)

연락처

616-8482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건전한 학교 문화 형성에 관리자 역할이 지대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①항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 주관 교장, 교감 등의 자격연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 교육 시간을 1시간 이상 확보하여 자격연수 과정을 운영

제45조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지원】

- ③ 교직원의 성 상담 및 고충 처리는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되, 학생이 피해자인 중대사안에 대해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양성평등교육담당)

연락처

616-8482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생이 피해자인 중대사안에 대해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지원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직원의 성 상담 및 고충 처리는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되, 학생이 피해자인 중대사안에 대해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직접 조사 실시 안내

제45조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지원】

- ④ 교직원의 성 상담 및 고충 처리는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되, 학교장 등 관리직 교직원이 행위자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양성평등교육담당)	연락처	616-848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장 등 관리직 교직원이 행위자인 성비위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전문적인 컨설팅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안 처리를 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장 등 관리직 교직원이 행위자인 성비위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에 대해 단위학교에 안내

제6장 교육활동 보호

제46조 【교육활동 보호】

-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법률상담과 지원기구를 구성하여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4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활동보호 지원기구를 구성하여 피해교원과 업무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21학년도 교육활동보호 매뉴얼(대전교육 2021-35)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법률 상담 신청 방법을 안내함
-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지원단의 컨설팅 신청 방법을 안내함

제46조 【교육활동 보호】

- ②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해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을 검토하고, 각 교실과 교무실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학교 예산 내에서 순차적으로 설치 되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4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휴대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함
- 교원안심번호서비스란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문자 송·수신 등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통칭함
- 민원인의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각 교실과 교무실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학교 예산 내에서 순차적으로 설치되도록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함

제46조 【교육활동 보호】

③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48조와 ‘사립학교법’ 제60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현직 교원이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감사관(공직감찰담당)	연락처	616-819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법 제20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 사립학교법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노력
- 관련 규정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각 기관(학교) 자체 교육 실시

제47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소관부서	재정과(사학지원담당)	연락처	616-872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는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며, 교권존중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업무 처리

제47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②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함

제47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③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회복 및 치유를 위한 비용 신청과 교원 치유지원센터 이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활히 신청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활동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와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신청이 원활하게 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와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신청을 위한 절차를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및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안내함

제47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 ④ 교육청은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돌봄교실 특기·적성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수업시간 담당 프로그램위탁운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돌봄전담사는 학생의 돌봄 및 보호, 안전관리, 프로그램 관리와 교실 관리를 하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6, 8207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강사 및 돌봄전담사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2022 대전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대전교육2022-2)
-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대전교육2022-4)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2022 대전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배부(강사의 학생안전 및 관리 역할 제시)
- 방과후학교 컨설팅 실시
- 2022 초등돌봄교실 실무 지원자료 배부(특기적성프로그램 강사 계약서에 책임 명시)
-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배부(돌봄전담사의 학생안전 및 관리 역할 제시)

제48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해당 교사가 대면을 원치 않을 경우, 대안프로그램 운영 등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시 건의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4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견조회 또는 시·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의견조사 시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대안프로그램 운영 등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함

제48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②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히 침해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입법화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4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견조회 또는 시·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의견조사 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입법화되도록 노력함

제49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① 교육청은 연 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및 홍보 동영상을 보급하여 각급 학교가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는 연 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4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은 연 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및 홍보 동영상을 보급하여 각급 학교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연 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제49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 수업방해, 정당한 교사의 지도거부 등을 행하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규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4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은 각급 학교 수업방해, 정당한 교사의 지도거부 등을 행하는 학생에 관련된 사안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함

제49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③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우선시 하고, 교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며, 교원 이외 강사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4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우선시함
- 교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매뉴얼 등에 안내함
- 교원 이외 강사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함

제49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④ 교육활동 침해 대처방안을 매뉴얼화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4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활동 침해사안 처리 절차 등을 매뉴얼화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각급학교에 보급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하도록 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함

제49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⑤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및 치유를 위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고 이를 교육청에 보고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4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활동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이행을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및 치유를 위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고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매뉴얼 등에 안내함

제50조 【공익제보자의 인권보호】

- ① 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노력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민원 및 공익제보자의 신분 및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공무원 및 관련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③ 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공개에 동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등에 따라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소관부서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	연락처	616-815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공익침해행위 제보자 보호 및 지원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2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제21조의2(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제②항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제보자 보호 및 지원 노력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 기관(학교) 자체 교육 실시

제7장 교원 후생 복지

제51조 【교원의 문화 활동 지원】

- ① 정부 및 교육청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박물관, 미술관, 고궁, 왕릉 등 문화 공간 입장 시 교원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한다. 또한, 학년 초 그 혜택을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예술교육담당)

연락처

616-8411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행사와 문화 공간 입장 시에 우대 받도록 노력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정부 및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 공간 입장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공문 발송
-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등 협조체제를 위해 노력
- 학년 초에 교원들에게 문화행사 및 혜택 안내

제51조 【교원의 문화 활동 지원】

- ② 교육청은 직영하는 문화 체육 시설을 교원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 관련 조례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교육복지안전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616-8814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이 직영 및 위탁 경영하는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원의 문화 활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규칙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관련 조례에 따라 학생의 문화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에게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방할 예정임

제52조 【교원의 후생 복지】

- 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남·여 휴게실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휴게실 설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시설과(시설2담당)	연락처	616-8775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의 남·여 휴게실 및 설비가 확보되도록 하고자 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대상학교의 여건 및 예산에 따라 남·여 휴게실 설치 및 설비 구비를 권장하여 후생 복지를 위해 노력

제52조 【교원의 후생 복지】

- ② 교육청은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 시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시설과(시설2담당)	연락처	616-8775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의 탈의실과 샤워실이 확보되도록 하고자 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는 설계 시부터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반영하고, 기설학교는 대상 학교의 여건 및 예산에 따라 탈의실과 샤워실을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함

제52조 【교원의 후생 복지】

-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문화행사, 체력단련 등 교원복지 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예산관리담당)	연락처	616-813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직원 후생복지비 예산 지원으로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직원 문화행사·체육행사 예산 편성관련 사항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반영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

제52조 【교원의 후생 복지】

- ④ 교육청은 체육(초등체육전담교사 포함) 및 실습담당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예산관리담당)	연락처	616-8133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활동 중 실습복이 필수인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복리 증진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 제57호, 2021. 1. 1.)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활동 중 실습복이 필수인 교사들에 대한 실습복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

제5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 ① 교육청은 여교원의 권리와 모자보호를 위하여 출산휴가, 육아시간을 신청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교원인사담당)	연락처	616-8325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련한 휴가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육청은 교원의 출산휴가, 육아시간 등이 관련 규정에 의거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

제5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 ②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여교사의 출산휴가를 조산·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허가하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여교사의 출산휴가를 조산·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허가하도록 안내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35호)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21호)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조산·유산·사산 관련 휴가 규정에 대해 안내

제5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 ③ 교육청은 여교원이 매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얻을 수 있으며,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5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여교원의 생리기간 중 휴식, 임신 기간 중 검진 등에 관련한 휴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여교원의 여성보건휴가(무급), 임신검진휴가 등이 관련 규정에 의거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

제5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 ④ 교육청은 자녀 출산 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남교원의 특별휴가 10일(1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을 보장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자녀 출산 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남교원의 특별휴가 10일(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35호)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21호)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규정에 대해 안내

제5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 ⑤ 교육청은 출산한 여 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시설과(시설기획총괄담당)	연락처	616-8756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출산한 여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불편 없이 위생적으로 수유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구비되도록 하고자 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의 여건 및 예산에 따라 출산한 여 교원들을 위한 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수유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

제53조 【교원 후생 복지】

⑥ 교육청은 교사가 육아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5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사의 육아시간과 관련된 휴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사의 육아시간과 관련된 복무가 관련 규정에 의거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
-

제5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⑦ 교육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포함)후 1년 미만의 여교사에 대해서는 근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정책담당)

연락처

616-8208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포함)후 1년 미만의 여교사의 모성보호를 위해서 근무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2022학년도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조성 운영계획(교육정책과-168. 2022. 1. 6.)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포함)후 1년 미만의 여교사의 근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교육활동중심 학교운영 여건조성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기관(부서)에 안내

제5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 ⑧ 교육청은 육아 휴직 교원이 복직하는 경우 원적교 복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생활근거지 및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2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육아 휴직 교원이 복직하는 경우 원적교 복직이 원칙이며, 생활근거지 및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휴직 교원의 복직 발령시 생활근거지 및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제54조 【출장 여비와 연구비】

- ① 교육청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며, 출장 중에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면 공무원 수당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5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의 출장 시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의 출장시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비가 지급되도록 하며, 출장 기간 중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54조 【출장 여비와 연구비】

② 교원이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예산관리담당)	연락처	616-813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법령에 따른 이전비 지급으로 교원의 복리 증진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공무원 여비 규정」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이전비 지급대상·지급 기준 등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반영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

제54조 【출장 여비와 연구비】

③ 교원연구비의 경우 유·초·중등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예산관리담당)	연락처	616-813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원연구비 지원으로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복리 증진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교육부)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교육부) 등을 준용하여 교원연구비 지급 기준이 정해지나, 유·초·중등의 차별을 철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

제8장 교육환경 및 학생복지

제55조【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① 교육청은 교실의 실내 측정 온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한다.

소관부서	재정과(경리담당)	연락처	616-870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환경조성 간의 이익형량을 통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교수·학습권 보장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는 일정 공간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탄력운영 실내온도 결정 심의 여부, 결정된 실내온도 준수 여부 등의 에너지절약 이행실태를 상·하반기 연 2회 점검 계획

제55조【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② 교육청은 학교 내 각 실의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하며, 공기청정기 등 적절한 시설 또는 장비가 설치되도록 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보건담당)	연락처	616-842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 시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적정 시설 또는 장비가 설치되도록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학교보건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기 질 점검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기준 초과시 개선 조치 및 학교 환경위생에 대한 관리방법 매뉴얼 안내 등을 통해 지도
- 전체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임차 및 유지관리 지원

제55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③ 교육청은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건축자재를 환경친화적 소재로 교체하며, 학교 신·개축 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소관부서	시설과(시설1담당)	연락처	616-8763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친환경인증자재 및 무석면자재를 사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석면안전관리법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자재사용승인시 친환경인증자재로 승인하며, 기존 석면자재를 2027년까지 완전 해소를 목표로 무석면자재로 교체 중에 있음

제55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④ 교육청은 각급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이 비치되도록 지도하고, 화장실 청소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단기간의 청소에 대하여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업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보건담당)	연락처	616-8424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화장지와 비누를 비치되도록 지도하고, 학교 화장실, 단기간의 청소에 대하여 외부업체 등 활용 권장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보건법 제4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생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화장실에 화장지와 비누가 비치되도록 지도하고, 학교 화장실 및 위험이 수반되는 단기간의 청소는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업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

제55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⑤ 교육청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초등학교 아동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계단 등 시설물 청소 및 학년 말 교실이동 청소에 대해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보건담당)	연락처	616-8424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생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학교 시설 청소에 대하여 외부업체 활용 권장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보건법 제4조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초등학교 아동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계단 등 시설물 청소는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업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
- 새학기 집중 기간 내 시설물 청소는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 교육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제55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⑥ 교육청은 외부인 출입 통제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생보호 인력 지원의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노력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생활교육담당)	연락처	616-8288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운영 지원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2022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 운영 예산 4,232,439천원(224교) 편성 및 지원
- 초등학교 방학 중 등교활동 관련하여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의 활동일 수를 확대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제56조 【학생복지】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 매점의 투명한 운영과 위생적 관리, 질 좋은 상품이 유지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보건담당)	연락처	616-8424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생 건강 및 복지를 위해 각급 학교 매점의 투명한 운영과 위생적 관리, 질 좋은 상품이 유지되도록 지도하고자 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매점의 수익 사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관리방법 매뉴얼 안내 등을 통해 학교 매점의 위생적 관리 및 질 좋은 상품이 유지되도록 지도

제56조 【학생복지】

② 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육과정담당)	연락처	616-8223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근로보호를 위한 사전교육 시간 확보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1-248호)
-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2019. 10. 18.)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매년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

제56조 【학생복지】

③ 교육청은 학교상담실을 점검하고 개선되도록 안내하여 학교상담실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담실이 미구축된 학교에는 상담실이 설치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생활교육담당)	연락처	616-8464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위기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학교·교육청·지역 연계 심리·정서 One-stop지원 체계 마련을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 제329호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위(Wee) 클래스 컨설팅과 평가를 통해 학교상담실 개선·지원 방안을 찾을 것임
- 신설학교와 상담실 미구축 초등학교의 상담실 설치를 위해 노력함

제56조 【학생복지】

④ 교육청은 GMO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기본계획에 권장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급식담당)	연락처	616-8433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NON-GMO 식품 사용을 권장하고, 분기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학교급식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NON-GMO 식품 권장 및 분기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계획 반영

제56조 【학생복지】

⑤ 교육청은 급식 시설 현대화(오븐기, 냉·난방 시스템 등)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건강과(학교급식담당)	연락처	616-8435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코자 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2021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교육부 2020. 12.)
-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

제57조 【학생자치】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제·개정, 운영할 때 학생 인권이 보장되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생활교육담당)	연락처	616-8462
------	-----------------	-----	----------

해설

- 학교 규칙 제·개정 및 운영 시에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함
-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이행계획

- 교육청은 인권친화적으로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도록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하며 학교 규칙을 모니터링함

제57조 【학생자치】

-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생활교육담당)	연락처	616-8465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생 자치활동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참여 확대 및 자기결정력 강화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생참여예산제 지원 강화 및 학생자치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본 내용을 포함한 공문 시행

제57조 【학생자치】

-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학생 자치 활동 공간(학생회의실 등)이 확보되도록 지원한다.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생활교육담당)	연락처	616-8465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학생자치 공간 확보를 통해 학생자치활동의 기반을 조성하여 학생자치 구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 공간인 학생자치 전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학생자치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본 내용을 포함한 공문 시행

제58조 【장애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 ①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계획, 전보 등 주요 정책수립 시 장애인 교원의 참여와 교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2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장애인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계획, 전보 등 주요 정책수립 시 장애인 교원의 참여와 교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함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제21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제20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장애인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 전보 등 주요 정책수립 시 장애인 교원, 교원노조 등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

제58조 【장애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 ②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업무지원인력을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7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업무지원인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등에 필요한 업무지원인력을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

제58조 【장애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③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인력의 원활한 직무 역할 수행을 위해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 인력에 대한 연수 및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특수교육담당)	연락처	616-8285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 보조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 및 장애이해교육 실시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직장내 장애이해교육 추진 시 장애인교원 보조인력 포함 연수 추진 안내
-

제58조 【장애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④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임용·전보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초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26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임용·전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제21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제20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장애인 교원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임용·전보할 수 있도록 노력
-

제58조 【장애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⑤ 교육청은 근무성적 평정 등 교원정책 추진 시 장애인 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불공정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담당)	연락처	616-8322
------	---------------	-----	----------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교육청은 근무성적 평정 등 교원정책 추진 시 장애인 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불공정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자 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원 평정편람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원 평정편람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교원정책 추진 시 장애인 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불공정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안내

부칙

제1조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 【협약갱신】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나 법령의 개정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공동해설서 작성】

교육청은 단체협약 공동해설서 초안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작성한 뒤, 대전교사노조와 의견 조율을 거쳐 유·초·중·고등학교(사립유치원 제외)에 배포한다.

제5조 【이행방법】

- ①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는 필요시 양측의 합의에 의해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계획 및 결과를 정책협의회에서 점검할 수 있다.
- ② 대전교사노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이행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연 1회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대전교사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④ 교육청은 본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공문 시행 등의 방법으로 학교장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에게 안내한다.
- 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및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제6조 【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연락처

616-8243

❖ 해설(협약 체결의 목적, 배경)

- 노사 간 원활한 단체협약의 이행과 협약의 체결 및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한 노사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함

❖ 근거(관련 법령·규정·판례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이행계획(향후 이행 방향, 추진 계획 등)

- 부칙의 협약 내용은 곧 이행의 내용이므로 각 조항별 내용대로 시행 추진

Ⅲ

교원노조 관계 법령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6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② 제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0조(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仲裁)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仲裁裁定)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3조(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행위로 교원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당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노동부장관에게”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재재정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7861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53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노동조합: 시·도 단위로 설립신고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 또는 시·도 단위로 설립신고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하나의 시·도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로 설립신고

제3조(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 요구 사항 및 조합원 수(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교육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시·도 교육감
 4. 국·공립학교의 장
 5.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제1항제5호의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
- ③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관련된 노동조합은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⑤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그 공고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⑥ 교섭노동조합과 상대방(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은 제5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2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에게 교섭 내용, 교섭 일시·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⑦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의2(교섭위원의 선임)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하 “교섭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이 법 제6조제6항에 해당하면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②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③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교원인 조합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산출된 교섭위원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전단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섭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의 선임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난 날 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⑤ 교섭노동조합이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 수의 산정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하되,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조합원 1명에 대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명단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지체 없이 해당 교섭노동조합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한다.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⑥ 교섭노동조합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견이 계속되거나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제3조제5항에 따라 공고된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노동쟁의의 조정 등)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리고, 법 제11조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에게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구제신청 접수 통보) 노동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로, 같은 영 제10조제2항 중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 구역”은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으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11조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제3호”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도”로,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제12호·제13호·제14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제17호·제18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31853호, 2021. 6. 29.〉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7호, 2021.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①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서식 중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도(시·군·구)”는 각각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제14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327호, 2021. 7. 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